

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4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10. 14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9. 10. 14

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6 (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도시계획국장 김진영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법령에서 ‘아파트지구’ 및 ‘아파트지구개발사업’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”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“정비계획”으로 봄에 따라
-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동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는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근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

- 2003. 5. 29일에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되면서 관련조항이 삭제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도 아파트지구가 삭제되어
- 후속 조치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- 없음

< 답 변 >

- 없음

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문희출, 강문기, 노경수, 박승희, 이재호, 성용기, 이은석 위원
-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7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 타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